

전주지방법원 2021. 7. 7 선고 2021가단950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7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1999. 12. 8. 접수 제10447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임성실